

1. 개정 이유

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 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7891호, 2020. 01. 12. 공포, 2021. 05. 13. 시행)됨에 따라,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를 정비(안 제53조 등)

3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·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, 1월 중 실시 예정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63조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91조제1항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97조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을”으로 한다.

별표 20 제1호 (주) 제1호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별표 28 제2호의 6의 위반사항란 및 내용란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별표 29의 1의 내용란 중 “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”을 “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3조(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)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<u>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</u> 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.	제53조(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) ---- ----- ----- <u>자동차등</u> ----- ----- -.
제54조(운전면허의 조건 등) ① (생략) ②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<u>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 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. ~ 라. (생략) 2. · 3. (생략) ③ ~ ⑥ (생략)	제54조(운전면허의 조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자동차등</u> ----- -----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3조(필기시험의 출제비율)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	제63조(필기시험의 출제비율) -- ----- -----

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
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
 외한다)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
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
 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
 른 시험을 95퍼센트, 영 제47조
 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
 다.

제70조(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
 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
 별)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
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
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
자동차등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
 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
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
 른다.

1. ~ 10. (생략)
- ②·③ (생략)

제75조(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
 기준 등) ①법 제84조제1항제4
 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
 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
 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
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군의 자
 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

자동차등

제70조(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
 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
 별) ①

자동차등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5조(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
 기준 등) ① 자동차등

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
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
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
않은 사람을 말한다.

② (생 략)

제91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처
분 기준 등) ①법 제93조에 따
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
시킬 수 있는 기준(교통법규를
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
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
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
준을 포함한다)과 법 제97조제1
항에 따라 자동차등(개인형 이
동장치는 제외한다)의 운전을
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
28과 같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97조(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
지)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7조
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
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
(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)
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
전을 금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
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1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처
분 기준 등) ①-----

----- 자동차등 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97조(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
지) -----

----- 자동차등을 -----

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	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